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공포)되었으며,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교육부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관할 배제(안 제2조제1항)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 사건의 심의·의결을 배제함

나.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설치 신설(안 제25조)

-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징계위원회를 설치

다. 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신설(안 제26조)

-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과 안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신설(안 제27조)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마. 준용규정 신설(안 제2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8.11. ~ 2022.8.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공립의 대학”을 “국가교육위원회, 공립의 대학”으로 한다.

제4장의 제25조부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법제2조제4항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6조(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 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재심사 청구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제20조2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의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은 각각 “제26조제2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4항 중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지명, 위촉하여야 한다.”로, 제14조와 제17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u>공립의 대학</u>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 (<u>국가교육위원회, 공립의 대학</u> ----- ----- -----) ----- ----- ----- ----- ----- ----- ----- ----- -----.
< 신설 >	제4장 <u>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u> 제25조(<u>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u>) ① <u>법제2조제4항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u>

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
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
회(이하 “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징계위원회는 국가교
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
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6조(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
속 장학관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
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u>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u> <u>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u> <u>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③ 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u>제27조(재심사 청구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 <u>②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제20조2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u>
--	---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의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은 각각 “제26조제2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4항 중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은 “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u>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u>”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지명, 위촉하여야 한다.”로, 제14조와 제17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3203